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캐나다 외교통상부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양자간 전통적 우호관계의 강화를 희망하고,

균형 있고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는 토대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연구개발의 세계화 및 과학기술 지식의 빠른 성장과 확산이 증대하는 시기에 협력증진에 따른 이점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혜택 원칙하에, 양국 관련 기관간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의 촉진에 중점을 두어 과학기술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2. 분야

협력 활동은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 a. 과학기술정책 및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류
- b.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 c.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교류
- d.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 e. 기타 당사자간 동의된 활동

3. 이행

1. 당사자는 2년 또는 상호 수락 가능한 기간마다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 a. 본 약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와 논의
 - b. 본 약정에 의거하여 이행된 협력 활동의 진도 검토
 - c. 양국간 협력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조치 검토
 - d. 새로운 잠재적 협력분야 발굴 및 이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수단 제안
2. 당사자는 양국간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 활동과 관련된 주관부처이다. 당사자는 자국내 여타 정부기관, 과학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가 본 약정하에 수행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자간 회의는 원칙적으로 양국간 교대로 개최된다.
4. 당사자는 상호 상시 실무연락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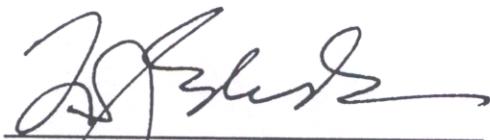
4.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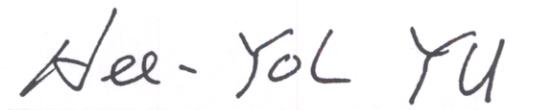
본 약정하에 이행된 활동은 현존하는 자금과 인력에 의존하며, 이들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국 비용은 자국이 부담한다.

5. 최종 조항

1. 본 약정은 국제법하의 여하한 구속력 있는 의무를 창출하지 아니하며, 국제법하에서 현존하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본 약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본 약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3. 본 약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 동일 기간동안 갱신될 수 있다.

2002년 7월 5일 오타와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 영어, 불어 및 한국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캐나다 외교통상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부를 위하여